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 1048

제안연월일: 2016. 02. 26 제 안 자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○ 2016년 2월 16일 김희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, 같은 해 2월 23일 김정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,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,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일자리기능과 주거기능이 동시에 일어나는 준공업지역의 특성에 맞춰 '개발을 통한 산업재생'과 '낙후된 주거지 재생'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방식을 다양화하고 그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준공업지역의 재생과 활성화를 도모함.
- 시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의 연임가능 횟수를 제한하고, 위원회 회의록 공개시기를 단축하는 등 조 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가. 준공업지역 정비수법을 당초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모든 정비사업, 도시개발사업까지 확대하고, 임대산업시설의 확보 가능 정비수법을 당초의 전략재생형 외에 산업재생형까지 확대함. (안 제35조제1호, 안 별표 2 제3호 및 제4호, 안 제55조제4항제3호)

- 나. 정비대상 면적기준을 당초 1만 m²이상에서 3천 m²이상까지로 확대하고, 입체적 정비가 가능하도록 산업복합건물의 용적률을 산업시설의 바닥면적 비율에 따라서 완화하도록 함.
 (안 제35조제1호, 안 제55조제4항제6호 및 별표 2의2)
- 다. 직주근접형 준공업지역 재생 지원을 위해 역세권의 공장비율 10%미만인 3천㎡이상 지역의 임대주택 및 기숙사, 산업단지 내 기숙사의용적률을 400%까지 완화하고, 산업지원시설의 범위에 기숙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함.(제55조제4항제4호 및 제5호, 안 별표 2 제3호)
- 라. 임대주택 관련법령의 개편에 따른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의 근거법령 변경함.(안 제35조제1호, 안 제55조제4항제2호 및 제3호, 제14항).
- 마.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외부 위촉직 위원의 연임가능 횟수를 제한 하고,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가능 시기를 단축함.(안 제57조제4항, 안 제61조제2항)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1호 중 "공동주택(다만, 기숙사 및 「임대주택법」제16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과 도시환경정 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산업부지를 확보하고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)"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공동주택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
- 나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제4호의 기업형임대주택 및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(단,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이 포함된경우는 제외한다)
- 다. 지구단위계획,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제2조제2호 각목의 정비사업 또는 「도시개발법」제2조제1항의 도시개발사업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산업시설의 설치 또는 산업부지를 확보하고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

제55조제4항제1호 중 "고시원"을 "다중생활시설"로, "다만, 임대산

업시설(시장이 영세제조시설, 산업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 대로 공급하는 시설물 또는 그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말한다)"을 "다만. 전략적인 산업재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임 대산업시설(시장이 영세제조시설, 산업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로 공급하는 시설물 또는 그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"로. 같은 항 제2호 중 "「임대주택법」제16조 제1항제1호, 제2호 및 제3호의 임대주택은"을 "「공공주택 특별 법」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, 제2조제4호의 기업형임대주택 및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 은"으로, 같은 항 제3호 중 "「임대주택법」제2조제3호의2의 장 기전세주택이"를 "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제2조제1호라목의 장기전세주택 또는 임대산업시설을 확보하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 한 특별법, 제2조제4호의 기업형임대주택 및 제5호의 준공공임 대주택이"로 하고.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.

- 4. 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역세권(철도역의 각 승강장의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)내 별표 2에 따른 공장비율이 10% 미만인 3천제곱미터 이상의 사업구역에 건축하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400퍼센트로 한다.
 - 가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, 「민 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제4호의 기업형임대주택 및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

- 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(단, 다른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- 5. 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인 경우,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및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각종 계획에 의하여 기숙사를 건축할 경우의 용적률은 400퍼센트로 한다.(공동주택, 노인복지주택, 오피스텔, 다중생활시설 이외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)
- 6. 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안에서 제35조제1호 다목에 따른 산업복합건물(별표 2 제3호에 따른 산업시설과 공동주택 등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)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의 용적률을 적용한다.
- 제55조제14항 중 "「임대주택법」제16조제1항에"를 "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2조제1호가목,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제4호 및 제5호에"로 하고 "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"를 "1.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"로 하고 "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"로 한다.
- 제57조제4항 중 "연임할 수 있다"를 "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"로 하고, 제6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시장은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 - 1. 심의 종결된 안건의 경우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.
 - 2. 보류된 안건의 경우 최초 심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.
 - 3. 제2호의 기간이 지나 재상정된 보류 안건의 경우 심의 종결 또는 보류에도 불구하고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.
- 제35조제1호 관련 별표 2의 제3호 중 나목 및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- 나.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산업지원시설(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100분의 30이하에 한정한다). 단, 기숙사는 산업지원시설바닥면적 합계의 3분의 1 이하인 경우만 허용한다.
 - 다. 정비사업, 지구단위계획,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시설 또는 산업지원시설로 인정하는 경우
- 제35조제1호 관련 별표 2의 제4호 나목 중 "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"를 "정비사업, 지구단위계획, 도시개 발사업의 시행을 위한"으로 한다.

제55조제4항제6호 관련 별표 2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준공업지역내 산업복합건물의 용적률 적용방법
 - 가.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에 대한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합계의 비율에 따라서 산업복합건물의 용적률을 차등 적용한다.
 - 나. 사업구역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까지 인 경우에 적용한다.
 - 다.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비율은 별표 2에 따른 산업부지 확보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한다.

| 전체 바닥면적 대비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비율 | 용적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30% 미만 | 250% 이하 |
| 30~40% 미만 | 270% 이하 |
| 40~50% 미만 | 290% 이하 |
| 50~60% 미만 | 310% 이하 |
| 60~70% 미만 | 330% 이하 |
| 70~80% 미만 | 350% 이하 |
| 80~90% 미만 | 370% 이하 |
| 90% 이상 | 400% 이하 |

- 2. 산업복합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
 - 가. 산업시설은 별표 2 제3호에 따른 산업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산업시설 중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,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, 제14호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, 그 밖에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로한다.
 - 나. 산업시설 외의 시설은 제35조에 따라서 공동주택 등 준공 업지역내 허용되는 시설로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제55조제4항제4호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건축허가 신청(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와 건축 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건축신고를 접수한 경우까지만 적용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혂 햀 개 정 안 제35조(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제35조(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) 준공업지역안에서는 없는 건축물) -----영 별표 14 제1호의 각 목의 건축 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 1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2호 의 공동주택 중 공장부지(이적지 포함)에 건축하는 공동주택(다만. --- 공동주택. 기숙사 및 「임대주택법」제16조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에 의한 임대주택과 도시환경정비 다. 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2 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 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2조제1 의 산업부지를 확보하고 산업시설 을 설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 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. 「민간임 하다.) 대주택에 관한 특별법, 제2조제 4호의 기업형임대주택 및 제5호 의 준공공임대주택(단, 임대주택 이 아닌 시설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) 다. 지구단위계획, 「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」제2조제2호 각 목 의 정비사업 또는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의 도시개발사업은

혀 했 개 정 안 별표 2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산업시설의 설치 또는 산업부지 를 확보하고 산업시설을 설치하 는 경우 1의2. ~ 5. (생 략) 1의2. ~ 5. (현행과 같음) 제55조 (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) 제55조 (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) ④ 제1항제13호에도 불구하고 준공업 지역안에서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 이하로 한다. 1. 공동주택·노인복지주택·오피스텔· 1. ------고시원(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 다중생활시설-----는 경우도 포함한다)의 용적률은 250퍼센트로 한다. 다만, 임대산 ----- 다만. 전략적 업시설(시장이 영세제조시설, 산업 인 산업재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 고 임대산업시설(시장이 영세제조 시설, 산업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 로 공급하는 시설물 또는 그 시설 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말한 하여 임대로 공급하는 시설물 또 <u>다)</u>이 포함된 경우에는 400퍼센 는 그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 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-----트로 한다. 2. 제1호 본문에 불구하고 「임대주 2. ------ 「공공주택 특 택법」제16조제1항제1호. 제2호 별법,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 대주택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및 제3호의 임대주택은 임대분과 임대분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용적 별법, 제2조제4호의 기업형임대 률을 추가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 주택 및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

우 용적률은 300퍼센트로 한다.

제4호의 기업형임대주택 및 제

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2

5호의 준공공임대주택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| 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(단, |
| | 다른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 |
| | <u>우는 제외한다)</u> |
| <u>〈신 설〉</u> | 5. 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「산 |
| |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 |
| | 2조제8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산 |
| | 업단지인 경우, 「산업입지 및 개 |
| | 발에 관한 법률, 및 「산업집적 |
| |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 |
| | 률」의 각종 계획에 의하여 기숙 |
| | 사를 건축할 경우의 용적률은 |
| | 400퍼센트로 한다.(공동주택, 노 |
| | 인복지주택, 오피스텔, 다중생활 |
| | 시설 이외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 |
| | 는 경우도 포함한다) |
| <u>〈신 설〉</u> | 6. 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준공 |
| | 업지역안에서 제35조제1호다목 |
| | 에 따른 산업복합건물(별표 2 제 |
| | 3호에 따른 산업시설과 공동주택 |
| | 등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)을 |
| |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의 |
| | <u>용적률을 적용한다.</u> |
| 제55조 (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) | 제55조 (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) |
|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 | <u>4</u> |
| 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 | |
| 지의 지역에서는 「임대주택법」 제16 | [공공주택 특별법] |

혀 했

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제2조제1호가목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 에 따라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 할 수 있는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 다. 다만. 임대주택건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하로 용적률을 신청하 는 경우 그에 따른다.

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: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5퍼센트

제57조 (구성 및 운영)

- ① ~ ③ (생략)
- (4)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(4) ------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 할 수 있다. ------은 임기로 한다.
- ⑤ ~ ⑪ (생 략)

제61조 (회의록) ① (생 략)

건의 경우 6개월)이 경과한 날부터 공 한다. 개하여야 한다.

| 개 | 정 | 안 |
|---|---|---|
| | | |

| $\frac{\sqrt{12}}{\sqrt{12}}$ | <u> </u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한 특별법」제2조제43 | 호 및 제5호에 |
| | |
| | |
| | |
| | |
| | |
| | |

-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: 1.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
 - 2.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 :

제57조 (구성 및 운영)

-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-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-----, 한 차례만 연임
 - (5) ~ (10) (현행과 같음)

제61조 (회의록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시장은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 ② 시장은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 1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도시계획 1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도시계획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종결후 30일(단, 심사보류된 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1. 심의 종결된 안건의 경우 심의 후 |
| |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. |
| | 2. 보류된 안건의 경우 최초 심의한 |
| |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 |
| | <u>개한다.</u> |
| | 3. 제2호의 기간이 지나 재상정된 보 |
| | 류 안건의 경우 심의 종결 또는 보 |
| | 류에도 불구하고 심의 후 30일이 |
| |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. |
| | ③ (현행과 같음) |
| [별표 2]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(이적지 | [별표 2]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(이적지 |
| 포함)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 | 포함)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 |
| (제35조제1호 관련) | (제35조제1호 관련) |
| 1. 공장의 범위 | 1. 공장의 범위 |
| 가. ~ 다. (생 략) |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|
| 2. 산업부지 확보비율 | 2. 산업부지 확보비율 |
| 가. ~ 다. (생 략) |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|
| 3. 산업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산업 | 3. 산업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산업 |
| 시설의 범위 | 시설의 범위 |
| 가. (생 략) | 가. (현행과 같음) |
| 나.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3호 | 나.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 |
|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 | 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6조의4 |
| 2종 근린생활시설과 제7호 판매 | 제2항에 따른 산업지원시설(해당 |
| 시설은 가목 용도의 지원시설(해 |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100분 |

의 30이하에 한정한다). 단, 기

숙사는 산업지원시설 바닥면적 합

당 건축물연면적의 30%이하)에

<u>한한다.</u>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| 계의 3분의 1 이하인 경우만 허 |
| | <u>용한다.</u> |
| 다.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지구단위 | 다. 정비사업, 지구단위계획, 도시 |
| 계획 수립을 통하여 시 도시계획 |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시 도시 |
| <u>위원회 또는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</u> | 계획위원회 또는 도시·건축공동위 |
| 의 심의를 거쳐 산업시설로 인정하 | 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시설 또는 |
| <u>는 경우</u> | 산업지원시설로 인정하는 경우 |
| 4. 기타 | 4. 기타 |
| 가. (생 략) | 가. (현행과 같음) |
| 나. 공공시설부지의 위치·용도·비율과 | 나 |
|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| |
| 등에 대하여는 <u>도시환경정비계획</u> | <u>정비사업, 지구</u> |
| 및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시 도 | 단위계획,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|
| 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·건축공동 | <u>위한</u> |
|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. | |
| <u>〈신 설〉</u> | [별표 2의2] 준공업지역내 산업복합 |
| | 건물의 용적률 (제55조제4항제6 |
| | <u>호 관련)</u> |
| | 1. 준공업지역내 산업복합건물의 용 |
| | <u>적률 적용방법</u> |
| | 가.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에 대한 |
| |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합계의 비율 |
| | 에 따라서 산업복합건물의 용적률 |
| | 을 차등 적용한다. |
| | 나. 사업구역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|

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

역내 허용되는 시설로 한다.